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석면건축물의 해체 및 개량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신설 〉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27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1. 석면건축물 현황	7
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8

I .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13027호】

1. 발 의 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6.
3. 회부연월일 : 2025. 9.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전에 준공된 석면건축물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상당수가 노후화됨에 따라 석면이 비산되어 공기 중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음.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노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조사 등의 관리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석면의 해체 등에 드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해체와 개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소유자의 자발적 조치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석면건축물의 해체 및 개량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신설

개정안은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2(석면건축물 해체 및 개량에 대한 재정지원)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현행	개정안
	<u>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 지원수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학교 등 석면건축물(참고자료)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토록 하고, 50㎡ 이상 석면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해체 등에 드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¹⁾.

1) **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보한 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 가능하게 된 날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기후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의무]

사용 시	해체·제거 시
· 석면조사 실시·보고, 안전관리인 지정·신고 · 관리기준 준수(위해성평가, 실내 석면 농도 측정) · 관리대장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재	· 감리인 지정 배치 · 비산농도 측정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해체·제거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석면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조치만으로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석면건축물의 해체 및 개량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신설하려는 것으로,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인한 석면피해를 일정 부분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25조²⁾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석면안전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체·제거·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의 개량 등에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전라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³⁾에 근거하여 석면 철거에 드는 비용을 지방비로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지자체는 별도 비용지원 없이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관리·부담하고 있으며, 국고 지원시 관리소홀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리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임.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조치만으로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2

- 3) 「전북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 제10조(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조사 및 지원) ② 도지사는 건강취약계층시설 건축물의 석면 철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조사 및 지원) ②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시설 건축물의 석면 철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참고 1

석면건축물 현황

□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석면자재 50m²이상 사용)

① 지자체 관리 대상 : 총 14,768 개소

(단위: 개소, '25.8.31.)

구 분	'25.8월	'24년	'23년	'22년	'21년
합계	14,768	15,577	16,620	18,799	20,428
공공건축물	7,661	8,052	8,526	9,693	10,661
어린이집	1,205	1,350	1,548	1,952	2,209
대학교	2,982	3,166	3,492	3,890	4,083
다중이용시설	2,356	2,411	2,430	2,572	2,719
기타*	562	598	624	692	756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② 교육부 관리 대상 : 총 1,702개소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1,702	81	890	375	346	10

□ 건강취약계층 이용 석면건축물: 어린이집 등 4,241개소

(단위 : 개소, m²)

구 분	개소수	평균면적	총면적	산출 근거
계	4,241	205.0	869,682	
어린이집	1,236	248.0	306,528	'석면관리 종합정보망('25.9 기준)'
노인복지관 등	196	689.0	135,062	
지역아동센터	2,809	152.4	428,092	'25.12월부터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으로 편입 건축물 준공 연한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수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23.12기준))

참고 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12. 24.>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지하철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 나.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사.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 차.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타. 삭제 <2018. 5. 21.>
 - 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 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1. 한 개의 동(棟)인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